

**양성평등기금**  
**2016년도 자산운용지침**  
**(Investment Policy Statement)**

2016. 3

여 성 가 족 부

## 【목 차】

1. 개 요 .....	1
2. 자산운용관련 법규 .....	2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	2
4. 자산운용 체계 .....	3
5. 자금운용 계획 수립 .....	4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한도 .....	6
7. 자산배분 .....	8
8. 위험관리 정책 .....	10
9.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 .....	13
10. 성과평가 .....	16
11. 감사 및 공시 .....	18
12.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19
<참고 1> 리스크 관리기준 .....	21
<참고 2> 성과평가 관리기준 .....	32
<참고 3>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	36
<참고 4>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 .....	47

# 1. 개 요

## 1-1.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의 개요

동 자산운용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국가재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가.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관리주체인 여성가족부가 작성하며, 자산 운용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자산운용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현행법령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 나. 기금투자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다. 기금관리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라.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지침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 1-3. 기금의 개요

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1997년에 설치되었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 및 민간 출연금, 기금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 재원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 2. 자산운용관련 법규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가 규정한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또한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자산 운용지침, 리스크관리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다.

##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실현, 여성의 발전과 가족지원 등의 기금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대기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2. 자산운용의 원칙

기금의 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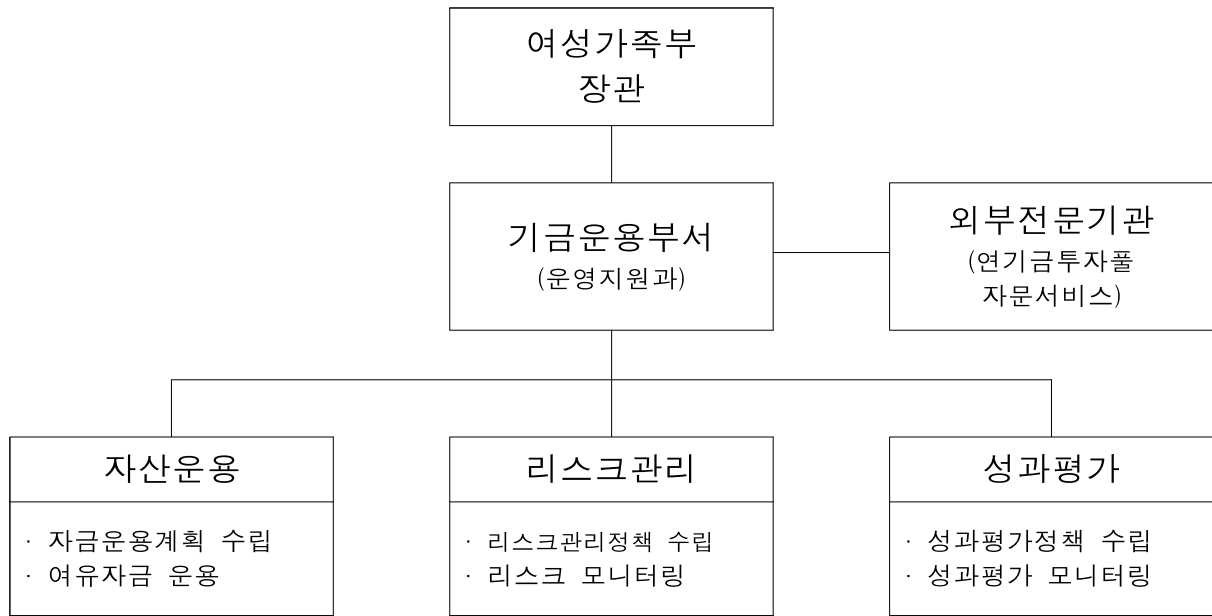
- 가.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안정성의 원칙)
- 나. 기금은 목적 사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수익성의 원칙).
- 다. 기금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며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공공성의 원칙).
- 라. 기금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지출과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유동성의 원칙).
- 마.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운용 독립성의 원칙).

## 4. 자산운용 체계

### 4-1. 의사결정 구조

기금은 아래와 같은 자산운용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 < 자산운용체계 >



### 4-2.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며, 기금 관련 내부인력에 의해 운용된다.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운용 담당 인력(부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월별 자금수지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 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 기타 기금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나. 리스크관리담당 인력(부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
- 총 허용 위험한도 설정 및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그 외 위험관리지침(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된 사항

다. 성과평가담당 인력(부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성과평가 관리 정책 수립
-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분석 및 보고
- 그 외 성과평가지침에 명시된 사항

## 5. 자금운용 계획 수립

### 5-1. 자금유·출입 규모의 분석 및 계획

가. 운용자금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단기자금	현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 자금</li> <li>·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3개월 이내로 운용되는 적정유동성)</li> </ul>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li> <li>·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li> </ul>
중장기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운용 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단기자금과 공자기금위탁금을 제외한 모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li> </ul>

나. 자금 유입과 유출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항목의 규모, 시기, 특성 등을 분석하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를 산정한다. 자금의 수입 및 지출항목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다. 수입의 경우 기금전입금, 재산수입 등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 기타경비 등으로 세분화한다.

다.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인 적정유동성 규모(buffer)를 산출하여 보유함으로써 기금 자금운용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 (1) 1단계 : 기금의 과거 3년간의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 분석, 자금 수지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
- (2) 2단계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90~99%의 확률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유동성 규모의 목표 수준(Target Level) 규모 설정.

### < 2016년 적정유동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목표관리기간	CaR		
	90%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1개월	7,499	9,624	13,612
2개월	10,605	13,611	19,250
3개월	12,988	16,670	23,577
4개월	14,997	19,249	27,224
5개월	16,768	21,521	30,437
6개월	18,368	23,575	33,343
7개월	19,840	25,464	36,014
8개월	21,209	27,222	38,501
9개월	22,496	28,873	40,836
10개월	23,713	30,435	43,045
11개월	24,870	31,921	45,146
12개월	25,976	33,340	47,154

(3) 3단계 : 당해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적정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규모를 자금운용계획에 반영. 기금은 95% 신뢰수준, 목표관리기간 1개월의 적정유동성 규모를 보유

(4) 4단계 : 향후 1년 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 중 적정유동성 규모를 제외한 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라.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방법론에 따라 2016년도 연간 단기자금 규모는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대기성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적정유동성 규모(buffer)를 합하여 92억원(100%)으로 추정함

#### 5-2. 자금 유·출입 규모의 재검토

연초에 설정한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매월 계획과 실적을 비교·평가하고 그 차이 금액과 자산운용 환경 등을 반영한 자금수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자금을 운용한다.



##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한도

### 6-1 목표수익률

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기대수익률”로 정의한다.

나. 당해연도 투자 자산군과 자금 운용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MMF 예상수익률로 설정하며,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국고채 3년 예상수익률로 설정한다. 또한, 연간 전체 자산 목표수익률은 단기와 중장기자산의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로 설정한다.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예상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한 연기금 투자폴 및 외부 전문 인력의 의견을 고려하여, “±a”를 설정할 수 있다.

#### < 2016년 목표수익률 >

구분	기준	설정치(%)
단기자산	MMF 예상수익률	1.52
중장기자산	국고채 3년 예상수익률	1.86
전체자산	자금배분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	1.52

### 6-2 허용위험한도

가.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허용위험한도의 개념을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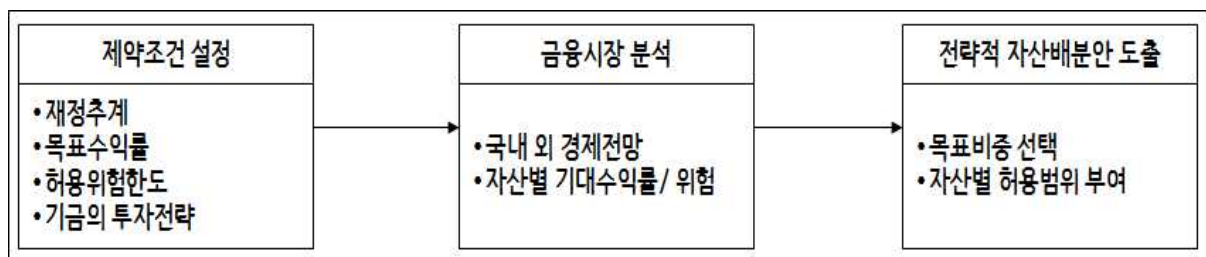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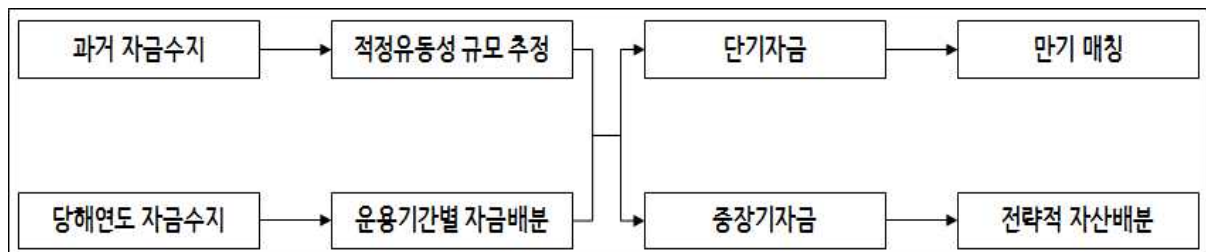
나. 기금의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로 통제하되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단기자산 : 포트폴리오의 1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넘지 못할 확률을 0.1%내에서 통제한다.(Shortfall Risk(0%)≤0.1%)
- (2) 중장기자산 : 포트폴리오의 1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넘지 못할 확률을 1.0%내에서 통제한다.(Shortfall Risk(0%)≤1.0%)
- (3) 전체자산 :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 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Shortfall Risk(0%)≤0.1%)

다.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연기금투자플 자문에 의해 설정여부를 결정하고 자산운용계획으로 반영한다.

## 7. 자산배분

< 기금의 자산배분 프로세스 >



## 7-1. 자산배분 원칙

기금은 사업성 기금으로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금성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나머지 기금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가치 유지를 바탕으로 투자가능 자산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설정된 목표수익률 및 허용된 위험수준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 7-2. 투자대상 자산군 및 투자 제한 사항

가. 기금의 운용 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기금의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외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분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현금성자산	MMDA, 보통예금 등	MMF, MMT 등
유동성자산	정기예금, CD, RP 등	CP, 채권 등
중장기자산	정기예금, CD 등	채권, 주식 등

나. 단, 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라도 다음과 같이 편입자산의 종목을 제한하며, 2010년부터 신규로 투자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한다.

구 분	은행신탁	수익증권
유형별	금전신탁(특정, 추가)	MMF, 채권형
신용등급	회사채	A- 이상
	CP	A2- 이상

### 7-3. 자산배분안

2016년 운용이 예상되는 여유자금 9,241백만원(평잔)에 대한 목표 자산배분(안)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목표비중	허용범위	비고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사업대기성	48	±6
		적정유동성	52	
	유동성자금		-	±6
단기자금 계			100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	-
		채권형	-	-
		주식형	-	-
중장기 자금 계			-	-
계			100	-

단, 급격한 경제환경 및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의 판단 등으로 자산배분안을 변경할 수 있다.

## 8. 위험관리정책

### 8-1. 위험의 정의

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의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른다.

## 8-2. 위험관리 종류 및 관리방법

### 가.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1) 정의 : 유동성 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2) 관리방법 : 기간별 자금 수급 및 유동성 갭을 측정하여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금별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현금과부족 규모와 추이, 금융상품의 만기구조를 사전적으로 점검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한다. 자금수지계획 대비 실제 집행 결과에 대한 변동성을 측정하고 신뢰수준 95%로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관리한다.

### 나. 신용위험(Credit Risk)

- (1) 정의 : 신용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 (2) 관리방법 : 채권투자 가능등급 및 규모 설정, 합리적 평가지표에 의한 운용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한도 차등 설정 등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 다.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 (1) 정의 : 운영위험은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 시스템 등의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2) 관리방법 :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라. 시장위험(Market Risk)

- (1) 정의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 (2) 관리방법 : 시장위험은 99% 신뢰수준의 월간 VaR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8-3.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금 자산운용 부서에서 담당하며, 기금의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나. 위험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1) 제 위험에 관한 측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2) 재무리스크 관련 총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 (3) 그 밖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8-4. 연기금투자자에 관한 예외 조항

가. 연기금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자 상품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투자자 위험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나. 단,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의 위험관리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9.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 담당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여유자금을 정부에서 선정한 연기금투자자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 가. 기금은 외부운용시 외부전문기관의 활용과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며, 외부운용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외부운용 시 위탁운용계약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성과측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9-2. 운용대상기관

- 가. 운용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은행권 금융기관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3) 「국가재정법」 제81조에 의한 연기금투자자

### 9-3. 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 가. 거래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나. 기금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운용기관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매니저의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탁자금의 추가 배정, 회수,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연기금투자자에 위탁운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 운영위원회에서 투자자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담당하므로 자산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1) 단, 연기금투자자 위탁자산의 수익률 및 편입자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 연기금투자자 주간운용사간 자금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고4>의 연기금투자자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에 따른다.

#### 9-4. 제한사항

가. 운용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 금융기관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 (2) 거래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 (3) 거래 금융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신뢰성 및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9-5. 운용상품의 환매, 상품교체 및 재투자정책

가.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생기관의 신용도 하락, 자금수지 변동에 따른 유동성 부족,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다.

나. 유동성 부족, 발생기관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무적 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부터 매도 또는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우선 매도 또는 환매하며 상품별 매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채권) : 장단기 금융시장 전망을 토대로 만기 전 매도 또는 환매에 따른 예상손실이 적고, 매도 및 환매가 용이한 상품 순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 (2) 확정금리형 상품(예금) : 약정금리가 낮은 순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다. 여유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적정유동성을 고려하여 단기자금 또는 중장기자금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단기자금으로 재투자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 (1) 수익성 : 예상수익률이 높은 상품 운용
- (2) 금융회사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 금융회사별 예치한도 범위에서 예금, 채권 운용
- (3) 허용위험한도 : Market VaR 한도 내에서 운용
- (4) 자산배분비중 : 자산배분안 허용 범위에서 상품 운용

마. “다”에 따라 중장기자금으로 재투자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과 금융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예상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 (1) 만기구조 :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른 미래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자금이 필요한 만기구간에 우선 운용
- (2) 금융회사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 금융회사별 예치한도 범위에서 예금, 채권 운용
- (3) 허용위험한도 : Market VaR 한도 내에서 운용
- (4) 자산배분비중 : 자산배분안 허용 범위에서 상품 운용

## 10. 성과평가

### 10-1. 성과평가 원칙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부서)과 독립된 인력(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평가 관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10-2.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 향후 자산운용, 운용대상자산 조정, 금융기관 선정 등에 반영한다.

### 10-3. 성과평가의 기준

가.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단, 경우에 따라 평잔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투자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조정수익률인 정보비율(IR ratio)이나 무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 수익률 비율(Sharpe ratio) 등을 사용하여 성과평가 한다.

$$IR = \frac{\text{벤치마크 대비 연간 초과수익률 } (\alpha)}{\text{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률의 연간 표준편차 } (\sigma)}$$

$$\text{자산운용의 Sharpe Ratio : } \frac{\bar{R}_p - \bar{R}_f}{\sigma_p} \quad \text{벤치마크의 Sharpe Ratio : } \frac{\bar{R}_b - \bar{R}_f}{\sigma_b}$$

#### 10-4. 기준수익률 설정

구 분			기준수익률	제공처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3개월 이내	MMF 수익률	한국은행
	유동성 자금	확정금리형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정기예금 6개월 미만 수익률	한국은행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정기예금 6개월 ~ 1년 수익률	한국은행
		실적배당형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국공채지수 3개월 ~1년	채권평가사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정기예금 1년 ~ 2년 수익률	한국은행
채권형			국공채지수 1년 ~2년	채권평가사	
주식			KOSPI	한국거래소	
전체 포트폴리오			$\sum(\text{자금별 투자비중} \times \text{자금별BM})$		

※연기금투자월에 위탁하는 경우 연기금투자월에서 제시하는 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음

단, 기금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미리 설정된 기준수익률은 변경이 가능하다.

## 11. 감사 및 공시

기금관리주체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나 내부 감사부서를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기금 운용 업무상의 위법,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을 평가한다.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 가. 일반사항 : 기금현황(목적, 규모, 특징 등)
- 나. 연간공시 : 재무제표,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총 투자현황 및 상품별 투자현황, 상품별 운용수익률, 자산운용지침 등
- 다. 수시공시 :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2.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이하 직원)는 기금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의의무를 다한다.

- 가.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마. 직원은 기금자산이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조직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바. 직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참 고 자 료

# 리스크 관리기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금운용의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기금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라 함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등 각종 불확실성이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
2.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 발생 원천 및 규모를 파악·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의 부담, 경감 또는 회피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재무리스크”라 함은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로써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를 말한다.

가. 유동성리스크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기간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위험에 직면하거나,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나. 신용리스크 :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다. 시장리스크 : 금리·환율·주가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

4.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5. “기준지수”라 함은 자산군별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장의 대표지수를 말한다.

6. “수익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 관련 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4조(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적·종합적·독립적으로 관리한다.
2. 리스크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특정부문에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시킨다.
4. 과도한 리스크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5조(리스크관리의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한다.



## 제 2 장 리스크관리 절차

제6조(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리스크인식 :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 및 분석한다.
2. 리스크측정 : 리스크측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가. 리스크측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다.
  - 나.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는 측정방법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 다. 리스크측정 방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리스크한도 설정 : 리스크한도 설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리스크 총한도 및 리스크 유형별 한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가. 기금의 자산운용전략, 사업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
  - 나. 자산운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환경의 변화
4. 리스크 모니터링 : 리스크관리 책임자는 시장변화에 따른 리스크 규모의 변동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 부담량이 리스크한도 대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5. 리스크보고 :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위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일관성 및 적시성을 유지하여 리스크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제 3 장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제7조(관리대상) 유동성리스크 관리대상은 기금의 조달 및 운용자금으로 한다.

제8조(관리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의 허용한도 및 목표비율을 설정한다.
2. 리스크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3. 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9조(관리방법) 유동성리스크는 과거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을 감안한 Cashflow at Risk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1.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정유동성 규모는 95% 신뢰 수준과 목표관리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Cashflow at Risk로 설정한다.
2. 담당부서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 월간 수입 지출 계획 및 실적 현황과 오차 원인
  - 나.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의 적정성
  - 다. 금융상품의 만기배분
3. 유동성리스크 노출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4 장 신용리스크의 관리

제10조(관리대상) 신용리스크 관리대상은 현금 및 예치금(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예치금 제외),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11조(관리기준 및 방법) 신용리스크의 관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은 은행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투자비율 및 최고한도 등을 수립하여 운용한다.
2. 외부운용 시 재무건전성 및 운용능력 등에 대한 적격기준 등을 수립하여 운용한다.
3.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금융기관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투자방식, 투자상품, 투자비율 등을 정하여 운용한다.
4. 투자상품이나 거래종목의 신용도, 관리종목이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5. 신용리스크 노출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 5 장 시장리스크의 관리

**제12조(관리대상)** 시장리스크의 관리대상은 금리, 환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시 영향을 받는 시장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금리형 상품은 제외한다.

**제13조(관리기준 및 방법)** 시장리스크는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시장리스크에 노출된 투자상품의 시장리스크(Market VaR)를 측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1. 시장리스크의 허용위험한도는 기금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추정된 예상투자금액을 기준으로 99% 신뢰수준의 월간단위 VaR 또는 %VaR로 설정하며 허용위험한도 외에 필요한 경우 운용한도 및 손실한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포트폴리오의 VaR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변동성을 사용하여 99% 신뢰수준의 월간단위 VaR 또는 %VaR를 측정한 뒤 허용위험한도 대비 소진율을 관리한다.

3. 시장리스크가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장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감시의 강화, 투자금액의 조정, 투자상품의 매도나 환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장리스크 노출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 6 장 운영리스크의 관리

**제14조(관리기준 및 방법)** 운영리스크는 자산운용 전 과정의 요소에 대한 관리와 자체적인 점검 등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영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도 또는 관행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운영리스크 노출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 7 장 투자상품 리스크관리

**제15조(투자가능자산)** 자산운용은 투자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위험자산을 제외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 채권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제16조(투자제한자산)** 기금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가능자산 중 다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1.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기업의 유가증권
2.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종목, 이상급등 지정종목
3. 불공정 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
4. 신용등급 A- 미만의 채권
5. 신용등급 A2- 미만의 기업어음(CP)
6.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유가증권
7.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17조(수익증권 편입자산 제한)** 여유자금을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익증권 내 편입자산은 다음으로 제한한다. 편입된 자산이 제16조에서 정한 투자제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채
2. 지방채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신탁재산 편입일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으로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 양도한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신용등급 AA 이상인 채권
6. 금리선물 등 채권관련 파생상품.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에 한하여 헷지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투자자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이내인 것
7. 유동성 자산
  - 가.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예금), 콜론, CD
  - 나. 은행, 금융투자회사가 발행, 보증,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가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2-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다. 환매조건부채권

8. 주식

**제18조(투자유가증권의 만기 전 매각요건)** 투자유가증권의 만기 전 매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성 위험으로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2. 금리, 환율, 자금조달구조의 변동 등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3.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산배분안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4. 기타 리스크관리 목적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 제 8 장 예외 조항

**제19조(연기금투자플 등)** 연기금투자플을 이용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기금투자플 위험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 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 실시한다.

[별지]

##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조치

### 1. 목 적

-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하여 이를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함

### 2. 대책 수립 배경

- 세계경제의 동조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각종 위험요인 증가 등 경영환경의 변화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요구

### 3. 위기상황

- 기금의 존립 및 경영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여 기금의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상황

#### 단계별 위기상황

##### ○ 정상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통상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 ○ 주의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통상수준으로부터 일정부분 불리한 방향으로 이탈하여 위험상황에는 근접해가는 상태로서, 사전에 기금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단계

##### ○ 위험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자본과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서, 기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단계

#### 4. 위기상황 판단지표

-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 등 리스크별 위기상황 판단지표로 구성
- 위기상황 판단지표는 담당부서가 관리 및 모니터링

#### 5. 위기상황 관리대책

- 관리 및 보고
  - 정상단계
    - 담당부서는 위기상황 판단지표를 모니터링
  - 주의 및 위험단계
    - 담당부서는 위기상황 관리전략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대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 담당부서는 조치사항을 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및 경제상황과 기금 특성 감안 시 불필요할 경우 생략 가능
- 위기상황 관리대책 수정
  - 담당부서는 단계별 위기상황 및 판단지표, 관리전략의 적정성 검토하여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수정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유동성 위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유동성 자금 보유비율이 10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유동성 자금 보유비율이 10영업일 연속하여 70~100%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유동성 자금 보유비율이 10영업일 연속하여 70% 미만</li> </ul>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대응방안 마련</li> <li>자금수지 현황 점검</li> <li>MMF를 제외한 신규투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대응방안 마련</li> <li>자금수지 현황 점검</li> <li>MMF를 제외한 신규투자 제한</li> </ul>
시장 위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R한도소진율 0~7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R한도소진율 10영업일 연속하여 70%초과~1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R한도소진율 10영업일 연속하여 100% 초과</li> </ul>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상황 및 한도소진원인 파악</li> <li>운용상품의 변동성 확대여부 및 운용기관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li> <li>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1차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해지 등의 필요한 방안 마련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li> <li>운용상품의 변동성 확대여부 및 운용기관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 수렴</li> <li>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매도 또는 환매</li> </ul>
신용 위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치대상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li> <li>개별기관 한도 내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등급 1단계 하락</li> <li>개별기관 한도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li> <li>예치금융 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li> </ul>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금융기관 또는 채권의 신규투자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해지 등의 필요한 방안 마련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li> </ul>
운영 위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특이사항 미발생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특이사항 발생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중대한 사항 발생시</li> </ul>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인파악 및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자에 서면통보 및 징계여부 결정</li> </ul>

<참고 2>

# 성과평가 관리기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표수익률”이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에 목표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2. “기준수익률”이란 운용자산 또는 운용상품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각 운용자산 또는 운용상품과 위험이 같거나 유사한 대체투자안(사전에 설정된 대표적 투자자산 또는 투자상품)의 실현수익률을 의미한다.
3. “시간가중수익률”이란 투자수익률을 복리계산(compounding)으로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4. “금액가중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기간 및 금액을 고려하여 획득한 수익성을 나타내며, 미래에 발생한 수익의 현가와 투자액을 일치시키는 수익률을 말한다.
5. “평잔수익률”이란 상품별 연 수익률을 일일 운용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한 수익률을 말한다.
6.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금 자산운용 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평가의 목적) 성과평가는 기금의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산운용 체계와 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운용수익의 극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절성 : 상황에 적절한 데이터를 측정·사용한다.
2. 지속성 :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통계나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정확성 : 통계적인 오류나 부적절한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표준화 : 성과측정의 도구나 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방법에 의해 실행한다.

제6조(성과평가 담당부서) 기금 자산운용의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담당 조직과 별개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2 장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7조(성과평가 주기)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기준수익률 설정)** 투자상품별 기준수익률은 자산배분에 앞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운용자산이나 개별 자산군의 기준수익률은 개별 운용자산의 기준수익률에 그 자산의 투자금액의 비중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제9조(성과의 측정 및 성과분석단위)** 성과평가를 위해 자산보유 현황, 거래 현황, 수익률 등을 일일 단위로 측정한다. 성과분석단위는 투자대상, 투자목적, 운용방식, 만기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기간별 성과단위 : 현금성, 유동성, 단기, 중장기, 전체
2. 유형별 성과단위 : 확정금리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성과분석 단위

**제10조(성과평가 방법)**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1.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2.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3. 위험조정수익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익률 측정)** 운용수익률은 전체 운용자산을 대상으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금액가중수익률, 평잔수익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시간가중수익률은 운용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간별 수익률을 산출한 후 이를 복리계산(compounding)으로 산출하여 측정한다.
2. 전체 기준수익률은 각 자산별 기준수익률을 투자자산별 투자비

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3.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른다.
4. 위험조정수익률은 샤프비율과 정보비율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다른 위험조정지표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 3 장 성과평가의 활용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성과평가 담당부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자금 운용체계, 자산배분전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시)**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참고 3>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산운용지침에 의거 기금의 자산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원칙) ①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연간 자금운용계획상의 자금 규모, 자산배분 정책을 감안하여 운용한다.

## 제 2 장 금융기관의 선정

제3조(선정대상) 운용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은행권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3. 연기금투자플

제4조(선정절차) ① 금융기관의 선정은 거래의 안전성, 거래 상품의 특수성, 정보제공, 기금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선정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5조(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① 별지2의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은행권 금융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지1의 “금융기관 등급별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권 금융기관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50% 초과 금융기관
2. 신용등급이 BBB+ 미만인 금융기관
3. 평가항목 미공시 금융기관
4.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6조(자산운용사 평가기준)** ① 별지3의 “자산운용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자산운용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지1의 “금융기관 등급별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50% 초과 자산운용사
2. 평가항목 미공시 자산운용사
3.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운용사

**제7조(증권사 평가기준)** ① 별지4의 “증권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증권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지1의 “금융기관 등급별 투

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50% 초과 증권사
2. 평가항목 미공시 증권사
3.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사

**제8조(금융기관 자산운용한도 및 선정의 특례)** ①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안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 이하이거나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제8조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3 장 금융기관의 관리

**제9조(금융기관 계약)**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서는 운용대상 및 규모, 운용방법,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성과평가,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기관의 관리)** ①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자산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의 강화, 담보의 확보, 채권의 보전, 예탁금의 회수, 계약의 해지나 그 밖에 운용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1조(거래제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거래금융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거래금융기관이 기금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 제 4 장 연기금투자폴 자금배분

**제12조(주간운용사 평가)** ① 연기금투자폴에 자금을 위탁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의 주간운용사 평가는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한 적용은 만기도래 및 신규 운용분 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별지1]

금융기관 등급별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급	등급산정기준	1개 기관별 투자한도
은행권 금융기관	A	종합점수 상위 25% 이내	30% 이내
	B	종합점수 상위 50% 이내	20% 이내
	C	종합점수 상위 50% 초과	0%
자산운용사	A	종합점수 상위 25% 이내	30% 이내
	B	종합점수 상위 50% 이내	30% 이내
	C	종합점수 상위 50% 초과	0%
증권사	A	종합점수 상위 25% 이내	30% 이내
	B	종합점수 상위 50% 이내	20% 이내
	C	종합점수 상위 50% 초과	0%

[별지2]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안정성	50	신용등급	30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사에서 공표하는 최근 회사채 신용등급 중 최하등급 적용
		총자산 (은행계정+신탁 계정-상호거래)	2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경영공시
재무건전성	30	BIS자기자본비율	2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경영공시
		무수익여신비율	1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경영공시
수익성	20	총자산이익률 (ROA)	2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경영공시
합계	100	※전국은행연합회 <a href="http://www.kfb.or.kr">http://www.kfb.or.kr</a>		

항목	세부기준	배점
신용등급 (30점)	AAA	30점
	AA	24점
	A	18점
	BBB+	12점
총자산 (20점)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BIS 자기자본비율 (20점)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무수익 여신비율 (10점)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총자산이익률 (ROA) (20점)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별지3]

자산운용사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기준
운용규모 및 인력	45	운용수탁고 (주식형+혼합형+ 채권형+대체투자)	30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펀드매니저 수	1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펀드매니저 업계 평균경력	5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재무건전성	20	영업용 순자본비율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수익성	25	영업이익률	1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총자산이익률 (ROA)	15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수수료	10	제안 수수료율		
합계	100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a href="http://dis.kofia.or.kr">http://dis.kofia.or.kr</a>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a href="http://freesis.kofia.or.kr">http://freesis.kofia.or.kr</a>		

항목	세부기준	배점
운용수탁고	상위 20% 미만	30점
	20% 이상 ~ 40% 미만	24점
	40% 이상 ~ 60% 미만	18점
	60% 이상 ~ 80% 미만	12점
	80% 이상 ~ 100%	6점
펀드매니저 수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펀드매니저 업계 평균경력	상위 20% 미만	5점
	20% 이상 ~ 40% 미만	4점
	40% 이상 ~ 60% 미만	3점
	60% 이상 ~ 80% 미만	2점
	80% 이상 ~ 100%	1점
영업용 순자본비율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영업이익률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총자산이익률 (ROA)	상위 20% 미만	15점
	20% 이상 ~ 40% 미만	12점
	40% 이상 ~ 60% 미만	9점
	60% 이상 ~ 80% 미만	6점
	80% 이상 ~ 100%	3점
수수료율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별지4]

증권사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기준
펀드판매잔고	40	펀드판매잔고 (주식형+혼합형+ 채권형+대체투자)	40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재무건전성	40	총자산	1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총자본	1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영업용 순자본비율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수익성	20	자기자본이익률 (ROE)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합계	100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a href="http://dis.kofia.or.kr">http://dis.kofia.or.kr</a>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a href="http://freesis.kofia.or.kr">http://freesis.kofia.or.kr</a>		

항목	세부기준	배점
펀드판매잔고 (주식형+혼합형+채권형+대 체투자)	상위 20% 미만	40점
	20% 이상 ~ 40% 미만	32점
	40% 이상 ~ 60% 미만	24점
	60% 이상 ~ 80% 미만	16점
	80% 이상 ~ 100%	8점
총자산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총자본	상위 2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8점
	40% 이상 ~ 60% 미만	6점
	60% 이상 ~ 80% 미만	4점
	80% 이상 ~ 100%	2점
영업용순자본비율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자기자본이익률 (ROE)	상위 20% 미만	20점
	20% 이상 ~ 40% 미만	16점
	40% 이상 ~ 60% 미만	12점
	60% 이상 ~ 80% 미만	8점
	80% 이상 ~ 100%	4점



<참고 4>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양성평등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이하 주간운용사) 자금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주간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을 위한 평가 및 배분비중 결정은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을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주간운용사”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자금배분 비중 결정) ①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비중 결정은 자산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별표 1의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②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비중은 주간운용사 평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또는 자금운용계획의 변경, 기타 자금배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주간운용사 평가) ①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비중 결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② 주간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반기 단위의 정기적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주간운용사 평가는 운용사 단위 또는 상품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예외)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주간운용사의 기금 관련 제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동 기준의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1 : 연기금투자상품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 >

자금배분기준의 점수차이 구간	주간운용사 배분비율(%)	
	삼성자산운용(A)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B)
20 < (A-B)	100	0
15 < (A-B) ≤ 20	90	10
10 < (A-B) ≤ 15	80	20
5 < (A-B) ≤ 10	70	30
0 < (A-B) ≤ 5	60	40
(A=B)	50	50
-5 ≤ (A-B) < 0	40	60
-10 ≤ (A-B) < -5	30	70
-15 ≤ (A-B) < -10	20	80
-20 ≤ (A-B) < -15	10	90
(A-B) < -20	0	100

< 별표2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평가기준 >

항 목 별			기준 및 배점				
안정성 (50점)	기금 집중도 <25점>	단기 국공채형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MMF	5% 미만	5% 이상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수탁고 규모 <25점>	단기 국공채형	1,000억 이상	800억 이상	600억 이상	400억 이상	400억 미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MMF		2조 이상	1.5조 이상	1조 이상	5,000억 이상	5,000억 미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운용 성과 (50점)	BM대비 초과 수익률 <50점>	단기 국공채형	0.1%p 이상	0.07%p 이상	0.04%p 이상	0.01%p 이상	0.01%p 미만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MMF	0.1%p 이상	0.07%p 이상	0.04%p 이상	0.01%p 이상	0.01%p 미만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1.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단기국공채형과 MMF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함.
2. 기금집중도는 예탁규모 기준 상위 3개 기금의 연중 일평균 비중(일평균 기준으로 퍼센트로 표시된 숫자)을 각각 제공하여 더함으로써 산출. 기금집중도는 운용상품의 기금 분산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표가 낮을수록 운용상품이 기금별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 기금 집중도={ (규모 1위 기금의 비중)<sup>2</sup> + (규모 2위 기금의 비중)<sup>2</sup> + (규모 3위 기금의 비중)<sup>2</sup> } / 100
3. 수탁고 규모 항목의 배점기준은 평가시점 해당연도의 연초이후 연기금투자플 수탁고 평잔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는 펀드평가회사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함.
4. BM대비 초과수익률 항목의 배점기준은 평가시점 해당연도의 연초이후 BM대비 초과수익률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는 펀드평가회사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함. 운용성과는 측정기간 연환산수익률을 사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점수를 배점함.